

“함께 하는 건설, 따뜻한 세상”



대한건설협회

수신자 외국인력 고용업체 대표이사

제목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(9.19~9.29) 안내

1. 고용노동부 ‘2022년 9월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’(2022.9.2.)와
관련입니다.

2. ‘2022년 9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’
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, 외국인력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고용허
가서 신청서를 ‘22.9.19(월)~9.29(목)까지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
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(붙임 2 참조)

※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2주간 하셔야 고용허가서를 신청하실 수
있습니다.(붙임 4 참조)

3. 아울러, 우리협회는 “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
대행기관”으로서 사증발급신청, 취업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, 고용허가서 발급시
‘업무대행계약서’에 “각종신청 대행” 및 “편의제공”을 신청(√체크)하여 우리
협회가 **관련업무를 대행**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4. 특히,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및 신청시 대한건설협회를
대행기관으로 지정하시고, 외국인력 고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용허가서 발급
즉시 ‘업무대행계약서, 외국인력현황표, 건설업등록증, 사업자등록증, 원도급계약서,
하도급계약서’를 메일(eskim@cak.or.kr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EPS상에서 고용허가 신청시 우리협회에 행정대행을 맡기실 경우에 ‘센터알선’과
‘사업주알선’ 중 ‘센터알선’을 클릭해 주셔야 협회에서 행정대행이 가능함을
알려드립니다.(붙임 5 참조)

※ 개별 현장에서 EPS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도 자료를 공유해서 ‘센터알선’으로
클릭하시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.

5. 또한, 고용노동부가 최근 고시개정 및 안내사항을 전달 해 오에 따라 다음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〈 고용노동부 안내요청 사항 〉

- '사용자교육' 의무 및 미교육시 과태료 부과('21.10.22 기 안내 사항, 붙임 6 참조)
 - (대상) '21.10.14.~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
 - ※ 사용자 : 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 인사노무담당자(현장별 적용)
 - (교육횟수)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, 총 6시간
 - (교과목) 노동관계법령·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
 - (교육비용) 무료
 - (과태료) 1회 300만원 부과

- 붙 임 : 1. 고용노동부 '2022년 9월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' 1부
2.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부.
3. 업무대행(가상계좌발급)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1부.
4. 구인신청노력 관련자료 1부.
4-1. 현장별 구인신청노력 샘플 1부.
5. EPS상 고용허가신청시 '센터알선'선택방법 안내 1부.
6.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(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) 1부. 끝.

